



보도자료

책임자 변혜원 실장(금융소비자연구실, 3775-9027)
작성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(3775-9033)
홍보담당 변철성 수석역(3775-9115)

보도 2022. 8. 4(목) 조간부터
배포 2022. 8. 3(수)
매수 총 4매

보험연구원, 『장수하는 고령사회, 준비와 협력(I): 사적연금 정책방향』 CEO Report 발간

“초고령사회 노후준비 위해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 절실”

- 보험연구원 강성호 선임연구위원·김세중·정원석 연구위원은 100세 시대에 건강한 대한민국을 위한 보험산업의 역할을 제시하고자 “장수하는 고령사회, 준비와 협력”이라는 시리즈 자료를 준비하였으며, 첫 번째 주제로 『장수하는 고령사회, 준비와 협력(I): 사적연금 정책방향』 보고서를 발표함
- (연금개혁 배경) 우리나라는 초고령사회로 급속히 진행되고 있는 과정에서 사회안전망이 채 구축되기도 전에 공공부분의 복지재정 팽창과 연금재정 악화에 직면하고 있어 이를 보완하기 위한 사적연금의 역할 강화가 불가피함
 - 2025년 노령인구 비중이 20%를 넘는 초고령사회에 진입할 것으로 예상됨
 - OECD 회원국 중 노인빈곤율(43.4%)이 OECD 평균(15.3%)을 크게 상회하는 국가이나, 공적연금만으로 이를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임
- (공적연금 한계) 국민연금은 넓은 사각지대, 낮은 급여 수준, 재정 불안정 등에 직면해 있는 가운데, 이를 보완하려는 기초연금 확대 역시 정부 재정을 통한 재원 조달에 한계가 있음.

- 국민연금은 납부예외자, 체납자 등으로 인해 사각지대 범위가 넓고 실질 소득대체율은 20.9%(2021년)로 낮은 상황임
- 국민연금 보험료율은 9%, 법정 소득대체율은 40%로 저부담·고급여 체계에 따른 재정 불안정 문제가 지속되고 있음
- 현 고령층의 노후소득보장을 위해 도입된 기초(노령)연금도 확대 과정에서 재정문제가 초래될 것으로 보임

* 기초연금은 2020년 현재 16.8조 원으로 전년 대비 14.0% 증가하였으며, 향후 기초연금 상향(30만 원→40만 원)으로 재정문제가 심화될 수 있음

○ (사적연금 평가) 사적연금은 취약계층의 가입률이 낮고, 퇴직연금은 이직 과정에서 적립금 대부분이 해지되며, 일시금 수령으로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할 뿐만 아니라 세제지원 수준이 낮음

- 2020년 현재 개인연금 가입률은 8천만 원 이상 소득자는 50.1%이나 2천만 원 이하 소득자는 0.1%에 불과하며, 근로자가 가입하는 퇴직연금 가입률은 300인 이상 사업장의 69.1%가 가입하고 있으나 5인 미만 사업장은 11.9%에 불과한 실정임
- 더구나 퇴직연금은 이직 시 IRP 계좌로 이관한 후 자유롭게 해지할 수 있어 이관 직후에 해지하는 경향이 높음(<부표 1> 참조)

* 2020년 기준 해지 인원은 84만 명(이관인원 대비 해지율 98.2%)이고, 총 해지 금액은 11조 원(이관 금액 대비 해지율 72.9%)에 달함(1인당 기준 이관 및 해지금액은 각각 1,767만원, 1,311만원)

- 수령단계에서는 대부분 일시금으로 수령함에 따라 사적연금의 노후소득보장 기능이 취약함

* 2021년 만 55세 이상 퇴직급여 대상자 중 연금수령 비율은 4.3%이며, 적립금이 적을수록 일시금을 수령함(일시금 적립금 1천6백만 원, 연금 적립금 1억 9천만 원)

- 한편, 사적연금 활성화를 위한 지원책인 세제혜택은 크지 않으며 가입 및 연금화를 유도하는 기능도 미미함

* 보험료(납부액) 대비 세제 지원수준은 OECD 12개국 평균 26%, 우리나라는 확정급여형, 확정기여형 각각 17%와 14% 수준

* 면세자의 납부보험료에 세제혜택이 발생하지 않아 가입유인이 떨어지고, 연금화 유도를 위한 세제혜택이 크지 않음

○ (정책 과제) 노후소득보장의 통합 목표소득대체율을 설정하고 공사연금을 연계할 종합 컨트롤타워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(<표 1> 참조)

- 공사연금 간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, 사적연금이 사회 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금 통합컨트롤 타워를 구축할 필요가 있음

* 노후소득보장의 목표소득대체율(예: 70%)을 설정하고 공사연금의 역할 분담 방안을 마련할 필요가 있음

* 공사연금 연계와 종합적 대책마련을 위한 컨트롤타워(예: 대통령 직속 전담조직)를 구성할 필요가 있음

- OECD 국가 수준으로 세제혜택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으며, 가입자 특성(소득수준, 연령, 가입기간 등)을 고려한 세제혜택 차등화가 필요함

* 50세 이상 사적연금 가입자에 대해 추가 세제혜택제도(Catch-up plan)를 상시적으로 적용하고 공제금액 및 세액공제율을 차등화(예: 50세 이상 가입자에 대해서는 세액공제율을 20% 이상으로)할 필요가 있음

* 특히, 면세점 이하 저소득층의 납부보험료에 대해서는 결정세액이 없더라도 세액공제 대상 금액만큼 지급되는 환급형 세액공제(Returnable Tax Credit)를 도입할 필요가 있음

- 퇴직금제도를 퇴직연금제도로 일원화하되 연금형태로 수급하도록 하고, 이직으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 연속성 강화를 통한 유지율 개선이 필요

* 퇴직금제로 운영하던 영세사업장에서 퇴직연금제도로 전환할 경우 운영경비에 대한 대출금리 지원을 검토할 필요가 있음

* 정년까지 IRP계좌를 해지할 수 없도록 하되, 긴급자금 필요 시 퇴직급여 담보대출을 적극 활용할 수 있도록 정책적으로 지원함

- 퇴직연금 수급연령인 55세를 60세(정년연령과 연동)로 상향 조정하고, 급여지급단계에서 특별한 의사표현이 없을 시 연금으로 수령하도록 하는 자동연금수급(예, 일본 일시금지급숙려제도*)을 원칙으로 설정할 필요가 있음

* 일시금지급숙려제도는 연금수급 후 일정기간(예: 5년)이 지난 후에 일시금 지급 청구를 가능하게 하는 제도임

- 2022년부터 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, 적립금 운용위원회 도입 등으로 자산운용 시스템에 변화가 발생하며, 이에 대응하여 수탁자감시기능 제고 등 수급권보호 강화 조치가 필요함

〈표 1〉 사적연금 정책과제 및 방향

구분	IRP 이관
퇴직연금 일원화/연속성 강화	퇴직금제도를 폐지하고 퇴직연금으로 일원화함 이직으로 인한 해지가 발생하지 않도록 제도의 연속성을 강화할 필요 있음
수급권보호	사전지정운용제도 시행, 적립금 운용위원회 도입 등에 따른 자산운용시스템 변화에 대응하여 수탁자감시기능 제고 등 수급권보호 강화 조치가 필요함
자동연금수급	퇴직연금 수급연령인 55세를 60세(정년연령과 연동)로 상향 조정 급여 시 자동으로 연금수급을 원칙으로 하는 자동연금수급제도(예: 일본 일시금지급숙려제도*) 도입
세제혜택	OECD 국가 수준으로 세제혜택 수준을 상향할 필요가 있음 가입자 특성(소득수준, 연령, 가입기간 등)을 고려한 세제혜택 차등화가 필요함
연금체계 재구축	공사연금 간 적정 노후소득보장을 위한 기준을 마련하고, 이를 통해 사적연금이 사회안전망 기능을 강화할 수 있도록 연금체계를 재구축함

〈부표 1〉 개인형 퇴직연금(IRP) 이관 및 해지 현황

(단위: 명, 억 원, %)

구분	IRP 이관			IRP 해지			
	인원(명)	금액(억 원)		인원(명)	금액(억 원)		
'15년	784,530	106,649	<1,359>	717,155	(91.4)	94,699	<1,320>
'16년	788,389	106,801	<1,355>	739,807	(93.8)	105,762	<1,430>
'17년	779,187	114,529	<1,470>	749,625	(96.2)	100,726	<1,344>
'18년	836,944	124,825	<1,491>	845,943	(101.1)	108,470	<1,282>
'19년	844,123	138,982	<1,646>	864,801	(102.5)	112,463	<1,300>
'20년	858,203	151,670	<1,767>	842,821	(98.2)	110,521	<1,311>
합산*	4,891,376	743,456	<1,520>	4,760,152	(97.3)	632,641	<1,329>

주: 1) < >안은 1인당 이관 및 해지금액임(단위: 만 원)

2) ()안은 이관인원 대비 해지인원 비율로 해지율임(단위: %)

3) *은 '15년~'20년까지의 합산한 수치를 의미함

자료: 통계청(2018); 통계청(2019); 통계청(2021c); 강성호(2020)

첨부: CEO Report 『장수하는 고령사회, 준비와 협력(I): 사적연금 정책방향』

- 본 자료를 인용하여 보도할 경우에는 출처(<http://www.kiri.or.kr>)를 표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